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 (명칭) 본 장학회는 은혜장로교회의 장학위원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은혜장로교회의 교인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1. 본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당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당 회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장학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으로는 남녀 선교회에서 각( 1~2)명씩과, 한 어 권과 영어권의 대표자중

한 명을 위원으로 한다.

4.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고, 교인의 수가 증가하면 다시3년 Term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1.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2. 장학금 지급 정지 처분.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에서 징계 (정학,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 한 학기 이상을 휴학하는 경우.

\* 본 회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3.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장학금 신청 자격 및 대상)

1. 본 교회 등록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현재 대학교와 대학원 (박사과정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대학에 등록한 사람.

2. 신앙의 모범이 되며, 예배 출석률이 2/3 이상인 사람.

3. 예배 시간을 잘 지키며, 예배 드리는 태도가 경건한 사람.

4. 봉사와 섬김이 아름다운 사람.

5.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6. 목회자의 자녀와 선교사의 자녀로서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현재 대학교와 대학원(박사과정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대학에 등록한 사람.

제6조 (장학금 지급 시기 및 지급액)

1. 년 2회 (1월초, 7월말) 지급 한다.

2.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교회의 재정 지원금과 장학금 수혜자의 수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하기로 하고, 장학금의 최고 지급액은

1회에 $1,5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장학금 수혜기간)

1.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한다.

제8조 (장학금 기금 조성)

1. 교회의 재정 지원으로 충당한다.

2. 약정 장학헌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제9조 (교회와의 관계)

1. 본 장학위원회는 은혜장로교회 산하의 한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당회)

의 감독을 받는다.

제10조 (본 규정의 발효 및 개정)

1.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당회)의 승인으로 발효되며, 운영위원회(당회)나 장학위

원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당회)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 (부칙)

1. 이 규정은 2017년 11 월12 일 부터 시행 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 : 제3조 4항, 제5조6항